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8일, 신정훈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9.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정훈의원)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교권 침해 및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문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의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보호자 교육과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보다 명확한 근거하에 지속적·체계적으로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보호자’,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학부모 지원 사업에서는 ‘학부모’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내에서 ‘보호자’와 ‘학부모’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용어 사용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한 경우 같은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박성훈의원 대표발의)<sup>1)</sup>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훈의원, 신정훈의원, 백승아의의원, 김준혁의원, 정성국의의원, 정을호의원, 진선미의원, 서영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561호, 2024. 7. 10. 발의, 2024. 7. 11. 회부)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